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량정법

주체86(1997)년 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4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

주체94(2005)년 12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37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11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2호로 수정보충

주체104(2015)년 2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9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23호로 수정보충

주체110(2021)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48호로 수정보충

주체111(2022)년 12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45호로 수정보충

제 1 장 량정법의 기본

제 1 조 (량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량정법은 량곡수매와 보관, 가공, 공급, 판매, 소비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량정사업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 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량곡의 계 획 적소비 원칙)

량정사업은 식 량을 비롯한 량곡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보장하는 중요한 사업 이다.

국가는 모든 량곡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량정체계안에서 류통시키며 계획적으로 소비하도 록 한다.

제 3조 (량정부문성과의 공고화원칙)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는 정확한 량정정책에 의하여 인민적인 식량공급제도가 마련되 었으며 량정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도 튼튼히 꾸러졌다.

국가는 량정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나간다.

제4조 (량곡수매원칙)

량곡수매 를 잘하는것 은 량곡원천을 확보하는데 서 나서 는 필수적 요구이 다.

국가는 량곡수매를 유일적으로 하며 국가적인 량곡수요와 농장원들의 리익을 다같이 고려 하는 원칙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량곡수매를 진행하고 량곡수매정형을 엄격히 총화대책하도록 한다.

제 5 조 (량곡보관원칙)

량곡보관을 책임적으로 하는것은 량곡의 손실을 없애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량곡보관에 필요한 물질기술적수단을 갖추고 량곡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보관하 도록 한다.

제 6 조 (량곡가공원칙)

량곡가공사업 을 개 선하는것 은 질 좋고 영 양가높은 식 량을 비 롯한 량곡가공제품을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선차적과업이다.

국가는 량곡가공시설을 현대화하며 량곡가공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 7 조 (량곡공급, 판매원칙)

량곡을 책임지고 공급, 판매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시책이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식량을 제때에 공급, 판매하고 공업 및 먹이용량곡을 비롯한 기타 량곡 을 계획적으로 보장하도록 한다.

제 8조 (량곡예 비조성원칙)

국가는 예 비량곡을 계획적으로 조성하며 기관, 기 업소, 단체와 공민이 량곡절약사업 에 자 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 9조 (량정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량정부문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 2 장 량곡 수매

제 10조 (량곡수매조직)

량곡수매는 생산된 알곡을 국가가 사들이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지방농업지도기관, 량정 기 업소는 가을걷 이와 탈곡, 건조, 포장, 수송 을 빈틈없이 조직전개하여 량곡을 제때에 수매받아야 한다.

제 11조 (량곡수매방법)

량곡수매는 의무수매와 판매분수매로 나누어 농업지도기관소속 량정기 업소가 받는다.

량정기업소는 정해진 장소에서 알곡의 잡질률과 물기률, 중량, 포장상태 등을 검사하고 수 매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생산자를 립회시켜야 한다.

제 12조 (량곡수매계 획의 작성과 수행)

중앙계획지도기관, 중앙농업지도기관은 해마다 량곡수매계획을 의무수매계획과 판매분수매 계획으로 나누어 세워야 한다.

의무수매계획과 판매분수매계획은 알곡생산계획의 해당한 알곡량을 수매하는것으로 세워 년초에 농업지도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판매분수매 계획은 의무수매곡과 농장자체조성곡, 농장원 현물분배 몫을 제외한 나머지 알곡, 의무수매계획을 받지 않거나 생산된 알곡을 자체소비하게 되어있는 단위들이 자체 로 소비하 고 남은 알곡으로 세운다.

농업 지도기관과 알곡생산기 관, 기 업소, 단체는 량곡수매 계 획을 어 김 없이 수행하여 야 한다.

제 13조 (알곡생산정형의 장악)

농업 지도기 관과 통계 기관은 알곡생 산정 형을 대상별 , 곡종별로 장악하여 야 한다.

알곡을 생산하는 토지를 사금채취같이 다른 목적에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리용 계 약에 따르는 알곡을 해당 단위에 넘겨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한 알곡에 대한 소비처리문건을 작성하여 지역 농업지도기관에 제때에 등록하고 해당 기관에 정확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조 (량곡수매대상)

알곡생 산기관, 기 업소, 단체는 정 해 진데 따라 자체조성 곡과 농장원현물분배 몫, 농 업 지도기 관에 등록하고 자체로 소비하게 된 알곡을 제외한 모든 알곡을 농업 지도기관 소속 량정 기 업 소에 수매하여야 한다.

알곡생산계 획을 받지 않는 비 경지같은것을 리용하는 단위는 알곡예상수확고의 해 당한 알곡 량을 농업 지도기관소속 량정 기업소에 수매 하여 야 한다. 그러 나 알곡을 수매 시 키 지 않게 된 경우에는 생산한 알곡을 해당 농업지도기관에 등록하고 정해 진데 따

라 소비하여야 한다.

제 15조 (량곡의 계량)

농업 지도기관소속 량정 기업소는 량곡을 정확히 계량하여 수매 받아야 한다.

국가계획 기관과 해당 기관은 량곡계량수단을 수요대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 16조 (량곡의 잡질률, 물기률)

알곡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매하려는 량곡의 잡질률과 물기률을 정한 기준아래로 보장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소속 량정기업소는 수매받는 량곡의 잡질률과 물기률을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제 17조 (량곡의 품질검사)

수매량곡에 대한 품질검사는 품질감독기관이 한다. 품질감독기관의 위임에 따라 농업지도기관도 품질검사를 할수 있다.

품질검사에는 알곡을 생산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을 립회시킨다.

제 18조 (수매 량곡의 포장)

량곡은 포장한것으로 수매한다. 그러나 곡종에 따라 포장하지 않고 수매할수 있다.

량곡을 수매시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을 정해진 용기에 담고 규격대로 포장하여야 한다.

제 3 장 량곡 보관

제 19조 (량곡의 장악)

량곡보관은 량곡의 손실을 막으며 그것을 질량적으로 보존하는 사업이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을 정확히 장악하고 그 특성과 용도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 20조 (량곡의 보관기관)

량곡보관은 량정 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수매한 량곡을 국가창고에 실어나를 때까지의 보관은 내각이 정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할수 있다.

제 2 1조 (량곡창고의 배치)

농업지도기관은 량곡창고를 교통이 편리하고 안전한 곳에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배치한 량곡창고를 없애려 할 경우에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 2 2조 (량곡창고의 건설)

국가계획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는 량곡보관량에 맞게 량곡 창고를 건설하며 량곡을 싣고부리는 장소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량정 기업소와 해 당 기관, 기 업소, 단체는 량곡창고구역 에 울타리 , 도랑 같은 량곡보호구조 물을 정해진대로 만들며 량곡창고구내길과 량곡을 싣고부리는 장소를 포장하여야 한다.

제 2 3조 (보관량곡검사, 국가예비량곡보관)

량정 기업소와 해 당 기관, 기 업소, 단체는 보관하는 량곡을 정상적 으로 검 사하고 바꾸어쌓 기와 쌀벌레잡이소독, 짐승피해막이 같은것을 정해 진대로 하여야 한다.

화학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쌀벌레잡이 약품같은것을 제때에 생산보장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보관하는 국가예비량곡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 새로 생산한 량곡과 바꾸어야 한다.

제 2 4조 (량곡창고구역보호)

량정 기업소와 해 당 기관, 기 업소, 단체는 량곡창고구역 에 량곡보관과 관련 이 없는 건물을 짓거나 폭발성, 인화성물질을 두지 말며 량곡창고에 불끄기시설과 기재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량곡창고구역에서는 불을 일으킬수 있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 2 5조 (량곡보관용기 , 보호재)

국가계획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는 량곡보관에 필요한 마대, 가마니, 방수포 같은 용기와 보호재를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량정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보관용기를 정해진대로 관리하며 그 회수리

용률을 높여야 한다.

제 26 조 (량곡의 수송)

운수기 관과 해 당 기 관, 기 업 소, 단체 는 량곡을 유개 시 설 이 갖추어 진 수단으로 실 어날라야 한다. 유개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수단으로 량곡을 실어나를 경우에는 방수포같은것을 씌워 눈비를 맞지 않게 하여야 한다.

역한 냄새가 나는 물질이나 독성물질 같은것을 량곡과 함께 실어나를수 없다.

제 27 조 (량곡의 입출고, 실사)

량정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창고에서 량곡의 입출고를 정해진 대로 하며 현물에 의한 경상경리를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실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그 정형을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량곡의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 따라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8조 (량곡경비조직)

량곡을 보관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경비체계를 바로세우고 경비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여 사건사고를 미리막아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중요량곡경비초소를 나오거나 없앨수 없다.

제 4 장 량곡가공

제 29 조 (량곡가공의 기본요구)

량곡가공은 식량을 먹기 편리하게 하고 공업원료, 집짐승먹이로 리용되는 량곡을 용도에 맞게 만드는 사업이다.

량곡을 가공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을 인민들의 기호와 영양학적요구, 공업부문의 수요대로 가공하여야 한다.

제 30 조 (량곡가공기 업소)

량곡가공은 량정기업소가 한다. 그러나 중앙농업지도기관의 승인밑에 기관, 기업소, 단체도 량곡을 가공할수 있다.

국가의 량정체계밖에서 량곡을 가공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 3 1 조 (량곡가공능력 의 조성)

농업지도기관은 량곡을 가공하는 기업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해당 지역의 농장자체조성곡을 제외한 모든 량곡을 가공할수 있게 가공능력을 조성하여야 한다.

량곡가공기 업소를 없애 려 할 경우에는 도농업지도기 관과 중앙농업지도기 관의 승인을 받는 다.

제3 2 조 (량곡가공공정의 현대화, 출미률, 실수률의 제고)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가공기업소를 위생문화적으로 꾸리며 량곡 가공공정을 현대화하여 량곡의 가공손실을 없애고 출미률과 실수률을 높여야 한다.

중앙농업 지도기 관은 해 마다 량곡의 출미 료과 실수률기 준을 정 해주어 야 한다.

제 3 3 조 (가공제품의 질제고)

량정 기업소와 해 당 기관, 기 업소, 단체는 량곡가공제품의 질을 높여 야 한다.

량곡가공시설과 제 품은 위 생문화적 으로 관리 하여 야 한다.

제 3 4 조 (가공부산물회수)

량곡을 가공하는 기관, 기 업소, 단체는 량곡가공과정에 나오는 쌀겨, 밀기울, 강냉 이눈 을 비롯한 부산물을 모두 회수하여야 한다.

제 3 5 조 (가공시설의 보수)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가공시설에 대한 계획적예방 보수체계를 세우고 보수주기에 따라 보수를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보수한 량곡가공시설은 대상에 따라 해당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3 6 조 (가공설비생산기지)

농업 지도기관과 해 당 기관은 량곡가공설비 , 부속품생산수리 기 지를 튼튼히 꾸리고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량곡가공설비, 부속품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계획대로 보장 하 여야 한다.

제 3 7 조 (가공전력보장)

국가계획기 관과 전력공급기 관은 량곡가공에 필요한 전력을 영농용에 포함시켜 가공용으로 따로 계획화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제 5 장 량곡수급과 공급, 판매

제 38 조 (량곡수급지 휘)

량곡수급과 공급, 판매는 량곡에 대한 지 역사이의 소비균형을 맞추고 인민들의 식량과 인 민경제부문에 요구되는 량곡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지방농업지도기관은 량곡수급지령체계를 세우고 량곡수급 지휘에서 기 동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며 량곡공급과 판매를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 39조 (국가량곡공급안의 작성)

중앙계획지도기관은 의무수매계획과 판매분수매계획에 기초하여 식량년도 국가량 곡 공 급안 을 세워야 한다.

국가량곡공급안에 대한 승인은 내각이 한다.

제 40 조 (량곡수급계 획)

중앙농업 지도기관은 국가량곡공급안에 따라 량곡수급계 획을 세워 야 한다.

제 41조 (량곡수급지역 의 맞물림)

중앙농업 지 도기 관과 도농업 지 도기 관은 량곡수급계 획 에 따르는 량곡수급기지 를 바로 정 하고 주고받는 지역을 맞물려주어야 한다.

해당 농업지도기관과 량정기업소는 수요자에게 계획된 량곡을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 42 조 (량곡운수수단보장)

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량곡을 제때에 수송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은 식량수송이 긴장할 경우 관할지 역 기관, 기업소, 단체의 운수 수단을 동원 시킬수 있다.

제 43조 (량곡공급, 판매기준량)

로동자, 사무원의 식량은 로동의 힘든 정도와 직종, 대상에 따라 공급, 판매 기준량과 곡종을 정하여 공급, 판매한다. 이 경우 식량을 정해진 공급, 판매기준량, 곡종과 다르게 공급, 판매하거나 2중으로 공급, 판매할수 없다.

식량공급, 판매기준량과 곡종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중앙농업 지도기관 이 한다.

제4 4조 (식량공급, 판매대상의 등록과 식량의 공급, 판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지방농업지도기관은 식 량공급, 판매대상을 정기적으로 정확히 등록하고 식량을 공급, 판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분식량을 철저히 가공하여 수요자에게 순별, 월별로 판매해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량공급, 판매대상변동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여 해당 농업지도기관에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4 5조 (식량공급소, 량곡판매소의 배 치)

중앙농업지도기관과 지방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식량공급대상인원의 분포 상태, 지역적특성에 따라 식량공급소, 량곡판매소를 배치하여야 한다.

식량공급소, 량곡판매소는 량곡공급 및 판매시설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고 계량을 정확히 하며 봉사성을 높여야 한다.

량곡판매소는 여유량곡의 구입과 판매사업을 정해진대로 하여야 한다.

제4 6 조 (부업 지 , 비 알곡생 산단위 의 종업 원식량)

기관, 기업소, 단체의 부업지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식량은 자체생산한 량곡으로 보장한다.

남새, 공예작물 같은 비알곡작물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관, 기 업소, 단체의 종업원식량을 해당 단위에서 보장할수 없는 경우 농업지도기관이 공급한다.

제4 7조 (공업 및 먹이용량곡의 공급, 판매)

농업지도기관과 량정기업소는 공업 및 먹이용량곡을 용도별계획에 따라 해당한 곡종으로 공급, 판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량곡재고량과 용도, 소비기준을 따져보고 필요한 량만큼 공 급, 판매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량정기업소는 공업 및 먹이용량곡의 판매를 분기별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 4 8 조 (량곡절 약)

량곡을 리용하는 기관, 기 업소, 단체와 공민은 량곡을 량비하지 말고 극력 절약하여야 한 다.

량곡을 가지고 암거래, 밀주행위를 할수 없다.

제 6 장 량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 49 조 (량정사업 에 대 한 지도통제 의 기본요구)

량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량정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 방도이 다.

국가는 량정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 50 조 (량정사업에 대한 지도)

량정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은 량정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량정사업을 정상 적으로 장악 지도하여야 한다.

제 51조 (농업지도기관의 임무)

농업지도기관은 알곡생산과 량곡수매, 보관, 가공, 공급, 판매, 소비정형을 늘 료해하고 량곡살림살이를 알뜰히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52조 (과학연구사업강화, 기술자, 전문가양성)

중앙과학기 술행 정 지도관리 기관과 농업 지도기 관, 교육기 관은 량정부문의 과학연구 기 지를 튼튼히 꾸리고 량정부문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과학연구 사업 을 강화하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 53 조 (량정사업조건보장)

국가계 획 기 관과 로동행 정기 관, 자재 공급기 관, 재 정은행 기 관, 해 당 기 관은 량 정 부문에 필 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 수매용상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 54조 (량정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량정사업 에 대 한 감독통제는 농업 지도기관과 해 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농업 지 도기관과 해 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 업소, 단체와 공민이 알곡생 산과 량곡 수매실 적을 허위보고하거 나 비법처 리 하는것을 비롯하여 알곡생산과 량곡수매 , 보관, 가공, 공급, 판매, 소비에서 위법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 55조 (회수 및 이관)

비법처 리 또는 류용, 랑비된 량곡과 소비과정 에 남는 량곡은 회수하며 그 가운데서 국

가량 곡수매분에 해당하는 량곡은 농업지도기관에 그밖의 량곡은 해당 기관에 넘긴다.

제 5 6 조 (변상처 벌)

량곡관리질서를 어겨 국가의 량곡에 손해를 준 당사자에게는 변상처벌을 준다.

제 5 7 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벌금을 물린다.

1. 수매하는 량곡을 정확히 계량하지 않았거나 잡질률과 물기률, 출미률을 정해진 기준대로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0만~30만원
2. 량곡보관을 정해 진대로 하지 않아 부패변질시켰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0만~50 만원
3. 국가의 량정체계밖에서 량곡을 가공하였거나 량곡의 가공실적을 루락시켰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0만~50만원
4. 량곡을 정해진 공급, 판매기준량과 용도별계획, 곡종과 다르게 공급, 판매, 소비하거나 2중으로 공급, 판매, 소비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50만~100만원, 공민에게 5만~10 만원
5. 량곡을 가지고 암거래 또는 밀주행위를 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00만~150만원, 공민에게 10만원
6. 량곡을 국가량정체계안에서 유통시키지 않았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00만~150만 원

제 5 8 조 (중지 처 벌)

이 법 제57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 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을 중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폐업시킨다.

제 5 9 조 (몰수처벌)

량정사업과 관련한 질서를 어겼을 경우 위법행위로 얻은 돈과 물건, 위법행위에 리용된 설비와 물자를 몰수한다.

제 6 0 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 는 책 임있는자에 게 경 고, 엄 중경 고 또는 3개 월 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처벌을 준다.

1. 의무수매계획, 판매분수매계획, 국가량곡공급안을 바로 작성하지 못하여 혼란을 조성시 켜을 경우
2. 시달된 의무수매계획과 판매분수매계획을 수행하지 못하였거나 변경시켰을 경우
3. 량곡을 국가량정체계안에서 류통시키지 않았을 경우
4. 생산한 알곡을 농업지도기관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알곡생산과 의무수매실적, 판매분수 매실적을 해당 기관에 정확히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5. 수매하는 량곡을 정확히 계량하지 않았거나 잡질률과 물기률을 정해진 기준대로 보장하 지 않았을 경우
6. 량곡보관을 정해진대로 하지 않아 부패변질시켰거나 량곡경비체계를 바로 세우 지 않아

화재, 분실, 도난 같은 사건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7. 량곡의 포장용기에 대한 보관관리와 회수리용을 바로하지 않아 량곡수매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량곡가공기업소를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고 량곡가공공정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잘 하지 않 았을 경우
9. 국가의 량정체계밖에서 량곡을 가공하였거나 량곡의 가공실적을 루락시켰을 경 우
10. 량곡수급계획의 작성과 량곡수급지역의 맞물림을 바로하지 못하여 량곡수급 사 업에 지 장을 주었을 경우
11. 량곡을 정해 진 공급, 판매 기준량과 용도별계획, 곡종과 다르게 공급, 판매 , 소비 하거 나 2중으로 공급, 판매 , 소비하였을 경우
12. 량곡수송조건을 구실로 공급받은 량곡을 팔아버렸을 경우
11. 량곡을 정해진 공급, 판매기준량과 용도별계획, 곡종과 다르게 공급, 판매, 소비하 거 나 2중으로 공급, 판매 , 소비하였을 경우
12. 량곡수송조건을 구실로 공급받은 량곡을 팔아버렸을 경우

13. 량곡구입과 판매사업을 비법적으로 하였을 경우

14. 농장원들의 식량분배정형을 거짓보고하거나 농장자체조성곡과 생산정상화몹을 정해진 대로 조성하지 않았을 경우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2만원분정도이상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별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별을 준다.

제 61조 (형사적 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